



#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항소제기 방침( \*\*\*\*\* )

다음 소송 사건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으나, 검찰의 항소제기 지휘(소송 사무제2과-9745,2015.12.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소하고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 1. 사건개요

가. 사 건 명 : \*\*\*\*\*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나.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중구청장,영등포구청장

다. 소 가 : \*\*\*\*\*

라.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마. 청구취지 :

-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바. 청구원인 : 원고는 이 사건 강남사옥은 지역본부, 사업부 및 당해 사업부 소속의 지점들이 입주하여 있고, 당해 사업소들은 지점별로 보험영업의 독립된 단위조직으로 각각 별도의 영업목표와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독립된 회계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영업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소의 인접성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주민세등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 하였음.

## 2. 소송진행사항

- 2015. 4. 15 - 소장 접수
- 2015. 10. 30 - 변론 종결
- 2015. 12. 11 - 판결 선고 (피고 패소)
- 2015. 12. 15 - 판결문 접수
- 2015. 12. 17 - 항소제기 지휘 요청
- 2015. 12. 22 - 검찰 항소제기 지휘 통보

### 3. 판결내용

#### 가. 판결주문

-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나. 판결요지

1)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은 사업부, 영업지점, 보상센터 등 상호간 ①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점, ②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회의실등 부대시설을 각각 배타적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③예산이 독립적으로 나뉘어 있고 회계 처리도 별개로 하고 있는점, ④각 영업지점 등에 소속된 종업원의 수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⑤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영업지점 등이 갖고 있는 독립된 사업소로서의 실체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⑥개별적으로 지점 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2)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근무한 종업원이 모두 면세점인 50명 이하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함

### 4. 항소 제기 이유

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각 영업지점 등은 동일한 사업주인 원고의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 등의 업무, 외관, 예산·회계 등의 독립성도 결국 원고의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한 방안으로서 구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한편, 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에서는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써 ‘건물 내의 식당, 체력 단련실, 회의실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각 업무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지’, ‘각 사업소의 직원수’, ‘채용 및 인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직원식당 등 부대 시설이 본점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각 사업부가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의 비용을 독립적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각 사업소의 직원들이 원고 본사에서 단일하게 채용되어 일정한 교육을 거친 후 파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 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어 보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항소제기함이 상당함

## 5. 행정사항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수행자 : 지방세무주사 이정현, 지방세무주사보 임현희

나. 항소장 제출

다. 검찰보고 (항소장 제출 보고)

- 붙임 1. 판결문 사본  
2. 항소제기지휘공문  
3. 사건진행사항. 끝.

---

주무관 **임현희**      세입관리팀장 **이정현**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전결 12/24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 **박도규**  
장

시행 세무2과-44573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95 /전송 02-3423-8867 / hminji@gangnam.go.kr / 부분공개(6)